

제20장 경쟁 정책

제20.1조 목적 및 원칙

1. 이 장의 목적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경쟁 정책의 이행을 보장하고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과 조율을 증진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혜택이 당사국들의 시장 내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행위나 거래로 인하여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2. 당사국들은 이에 따라 당사국들 각각의 경쟁법에 명시된 것으로서 다음의 행위가 당사국들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이 협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 가. 경쟁의 금지, 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기업 간 합의, 기업단체의 결정 및 동조적 행위
 - 나. 지배적 지위 또는 실질적 시장지배력 또는 주목할만한 시장 참여를 가진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남용, 그리고
 - 다.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기업 간의 결합

제20.2조 경쟁법과 경쟁당국

1. 각 당사국은 제20.1조제2항에 언급된 행위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나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경쟁법의 면제가 자국의 법규에 규정되고 투명하게 이행될 것을 보장한다.

제20.3조 이행

1. 경쟁당국에 의한 경쟁정책의 집행은 투명성, 적시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 법규에 따라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고, 발언을 하며, 그 제재 또는 구제의 재심을 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 법규를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각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자국의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모든 최종적인 결정이 서면으로 제공되며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모든 관련 사실 조사 결과와 법적 근거를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제20.4조 협력

1. 당사국들은 자국의 경쟁 법규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통보, 협의, 정보교환, 그리고 기술지원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하여 각각의 경쟁 법규와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협력한다.
3. 이 협력은 당사국들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20.5조 통보

1. 각 당사국은 제20.1조제2항에 언급된 행위나 거래에 관련된 집행 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집행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한다.
2. 그 당사국의 경쟁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통보는 집행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제20.6조 협의

1.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경쟁 법규를 발전, 유지 및 집행하는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20.7조 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각각의 경쟁 법규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밀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이는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각 당사국의 법규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20.8조 기술지원

1. 당사국들은,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경험 교환, 자국의 경쟁 법규와 정책의 이행을 위한 역량 구축 및 경쟁 문화의 촉진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영역에서 서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당사국들은 기술지원의 요청이 제출될 경쟁당국 내의 접촉선을 통보한다.

제20.9조 공기업과 지정독점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 및/또는 지정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들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이 그들 각각의 경쟁 법규의 적용대상이 되고 당사국들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20.1조제2항에 언급된 행위 또는 거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은 공기업 및 지정독점에 부여된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0.10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2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20.11조 경과조치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당사국이 경쟁법을 채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쟁당국을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2년의 기간 내에 이를 실행한다.

제20.1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경쟁촉진위원회(Comisión para Promover la Competencia)와 통신감독원(Superintendencia de Telecomunicaciones)
-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경쟁감독원(Superintendencia de Competencia)

- 라. 온두라스의 경우, 경쟁방어촉진위원회(Comisión para la Defensa y Promoción de la Competencia)
- 마. 니카라과의 경우, 국가경쟁촉진원(Instituto Nacional de Promoción de la Competencia), 그리고
- 바. 파나마의 경우, 소비자보호 및 경쟁방어청(Autoridad de Protección al Consumidor y Defensa de la Competencia)

또는 그 승계기관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7472호 「경쟁촉진 및 효과적 소비자보호법」 (Ley para la Promoción de la Competencia y Defensa Efectiva del Consumidor) 및 2008년 6월 30일 법률 제8642호 「통신일반법」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2004년 11월 26일 입법령 제528호의 승인을 받은 「경쟁법」 (Ley de Competencia)
- 라. 온두라스의 경우, 2006년 2월 4일 법령 제357-2005호의 승인을 받은 「경쟁 방어 및 촉진법」 (Ley para la Defensa y Promoción de la Competencia)
- 마. 니카라과의 경우, 2006년 9월 28일 법률 제601호의 승인을 받은 「경쟁촉진법」 (Ley de Promoción de la Competencia)
- 바. 파나마의 경우, 2007년 10월 31일 법률 제45호의 승인을 받은 「소비자 보호 및 경쟁방어를 위한 표준 확립에 관한 법」 (Ley que Dicta Normas de Protección al Consumidor y Defensa de la Competencia)

그리고 그 시행 규정 및 개정사항